

『기술창조발전소』 민간위탁(신규) 동의안

의안 번호	5931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3.
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- 선도적인 섬유 관련 업체 고도화를 통한 기술지원 공간 조성,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립 중인 기술창조발전소는 '21. 5월 준공 예정임
- 이에 따라 기술창조발전소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, 경제적·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예정으로서,
-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무를 「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1조 제1항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 동의 받는다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기술창조발전소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지방자치법 제104조
 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
 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~ 제12조
 -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
 -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~6조, 제18조
- 추진 필요성
 - 기술창조발전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염색가공 기업의 업종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는 염색가공 및 섬유소재 기술 활용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됨

- 건립 취지를 볼 때, 물없는 컬러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함
- 특히, 염색가공 기업의 물없는 컬러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초임계 염색 기술 지원, DTP 기술 지원, 관련 신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에 종합적인 전문성 및 관리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함
- * 초임계 염색 : 물 대신 이산화탄소(CO2)를 초임계 유체(액체와 기체의 중간) 상태로 만들어 사용하는 염색기술
- * DTP(디지털 날염, Digital Textile Priting)
 - 다이렉트 날염 : 섬유 소재에 이미지를 직접 출력하는 방식
 - 전사 날염 : 전사지에 이미지 출력 후 그 이미지를 다시 섬유소재에 전사하여 프린팅

다.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

- 위탁범위 : 기술창조발전소 운영 전반
- 위탁사무
 - 기술창조발전소의 종합적인 관리·운영
 - 기술창조발전소의 시설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
 - 입주기업들의 불편사항 점검 및 각종 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
 - 기타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위 치 : 대구 서구 염색공단로 97(비산동 3208-1)
 - 염색산업단지 내 다이텍연구원 소유로 지상권 설정 예정



<조감도>



<위치도>

- 사업규모 : 부지 1,799㎡, 연면적 6,582㎡(지하 1층, 지상 6층)
- 주요시설 : 편의시설, 임대공장, 사무실, 주차장 등
 - 지하1층 : 주차장, 편의시설, 기계실
 - 지상1층 ~ 지상2층 : 테스트베드 및 기술지원 공간, 관리실
 - 지상3층 ~ 지상6층 : 임대 공장, 임대 사무실
- 총사업비 : 130억원(국비 50, 시비 80)
- 운영인력 : 7명(센터장1, 테스트베드 파트3, 기술 및 운영지원 파트3)

마. 민간위탁 기간 : 2021. 6. 1. ~ 2024. 5. 31.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수의계약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없음(시설운영수입을 통한 독립채산 방식)
- 산출내역

예산항목		금액(천원)	산출근거
합계 ① - ②		0	
수입 (268,970) ①	임대료	218,970	- 임대수입 (4층 25천원/평, 3층, 5~6층 35천원/평) ※ 휴게실, 세미나실 등 편의시설 제외
	관리비	50,000	- 공장용 유틸리티비
지출 (268,970) ②	운영관리비	268,970	- 건물 관리비 비용 : 78,259천원 - 유틸리티비 비용 : 78,360천원 - 수선비 : 27,391천원 - 청소·경비 비용 : 84,960천원

아.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[평가담당관-2052(2021. 3. 4.)]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붙임1

나. 기술창조발전소 민간위탁 추진계획(별첨) : 붙임2

[붙임 1]

관 련 법 령

▣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~ 제15조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

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 기준 등)

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, 재정 부담 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의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

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(이하 “민간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민간위탁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,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, 처리기준의 불공정,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

■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

제22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·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)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·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

③ 관리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,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

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■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, 제13조~14조, 제18조

제4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대구광역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위탁사무 대상)

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아동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2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3. 환경 기초시설 운영, 폐수·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

- 4. 문화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5. 체육·공원시설 등 시민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- 6. 산업지원·직업훈련·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
- 7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제6조(위탁사무 선정기준)

시장은 제5조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
- 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- 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- 3. 경제적 효율성
- 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- 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- 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- 7.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 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8조(위탁계약 체결)

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사항을 공증하여야 한다.

- 1. 수탁기관의 명칭(성명) 및 주소
- 2.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
- 3.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
- 4. 수탁기관의 의무
- 5. 관리·감독 및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
- 6.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
- 7.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
- 8.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경우 그 사무의 범위
- 9.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등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

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
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2.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 정도,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3.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 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,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
▣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(별표 4)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운영기준

[별표 4]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

6. 관리수탁자 지정

나. 수의에 의한 방식

1) 수의계약 대상

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-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
-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

기술창조발전소 민간위탁 추진계획

선도적인 섬유 관련 업체 고도화를 통한 기술지원 공간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립 중인 기술창조발전소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I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04조[사무의 위임 등]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[행정재산의 관리위탁]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
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[민간위탁의 기준] 및 제12조[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 기준 등]
-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[행정재산의 관리위탁]
-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[위탁사무 기준, 대상, 선정기준] 및 제18조[위탁계약 체결]

II 추진방향

-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물없는 컬러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인 다이텍연구원에 민간위탁 하고자 함.

III 시설개요

- 명 칭 : 기술창조발전소
- 위 치 : 대구 서구 염색공단로 97 (비산동 3208-1)

○ 부지 및 건축물현황

• 부지현황

- 위 치 : 대구 서구 비산동 3208-1, 면적 : 1,799m²
- 소유권 : 다이텍연구원 (지상권 설정예정)

• 건축물 현황

- 규 모 : 지하1층 지상6층, 연면적 : 6,582m²
- 소유권 : 대구광역시 (민간위탁 예정)

○ 사업기간 : 2017년 ~ 2021년 5월(5년)

○ 총사업비 : 130억원(국비 50, 시비 80)

○ 주 용 도 : 공장(기술창조발전소) / 일반공업지역, 일반산업단지

○ 층별 면적 및 현황

(단위:m²)

층 별	주요 용도	바닥면적
지하1층	• 주차장, 편의시설, 부대시설, 설비실(기계, 전기 등)	1,309.92
지상1층	• 물없는 컬러산업 통합지원센터 - 인프라(초임계, DTP 장비 등) 공간	924.51
지상2층	• 물 없는 컬러산업 통합지원센터 - 연구 실험실 및 지원 사무실	1,039.08
지상3층	• 세미나실 등 공동활용시설 및 창업공간 - 세미나실 1실, 휴게실 1실, 창업공간 6실 외	824.99
지상4층	•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등 창업공간 - 회의실 1실, 휴게실 1실, 창업공간 11실 외	828.02
지상5층	•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등 창업공간 - 회의실 1실, 휴게실 1실, 창업공간 11실 외	828.23
지상6층	•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 등 창업공간 - 회의실 1실, 휴게실 1실, 창업공간 11실 외	828.02
합 계		6,582.7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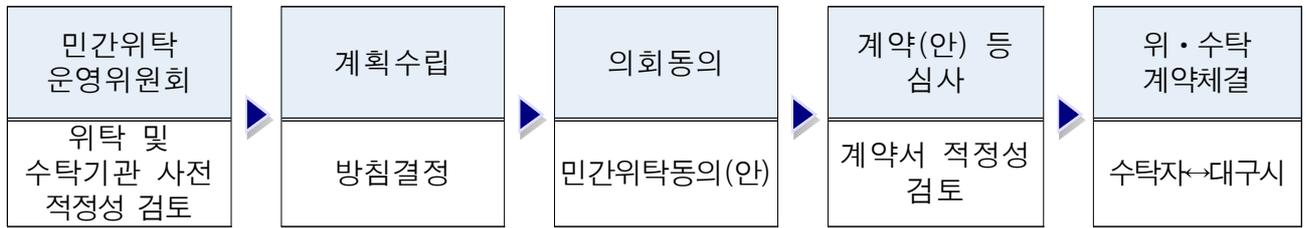
IV 세부추진계획

1. 위탁개요

- 위탁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
- 위탁범위 : 시설 운영·관리 전반
- 위탁방법 : 수의계약을 통한 민간위탁
- 위탁사무
 - 기술창조발전소의 종합적인 관리·운영
 - 기술창조발전소의 시설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
 - 입주기업들의 불편사항 점검 및 각종 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
 - 물없는 컬러산업 통합지원센터 관리·운영
 - 기타 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
- 위탁조건
 - 「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등 관련규정 준수
 -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·양도·재위탁 금지
 - 기타 상세한 위탁조건은 위·수탁 계약으로 정함
- 위탁운영비 산정 : 없음(시설운영수입을 통한 독립채산 방식)
- 위탁시설

시설명	위 치	시설규모(m ²)		시설현황
		부지	연면적	
기술창조 발전소	대구 서구 염색공단로 97	1,799	6,58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하 1층 : 편의시설, 주차장, 기계실 ○ 지상 1~2층 : 관리실, 테스트 베드 ○ 지상 3~6층 : 임대공장, 임대 사무실

- 추진절차



2. 수탁기관 선정

○ 선정방법

- 수의계약(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사전 심의)

○ 법적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의5
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별표 4
(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운영기준)

○ 선정기준

- 수탁기관의 전문인력 및 조직 보유현황
-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및 전문성
-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
- 대구시 창조기술발전소 건립 목적에 대한 이해도 및 확장 가능성

V 향후추진계획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○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| : '21. 3월 |
| ○ 계약서(안) 적정성 심사 및 일상감사 | : '21. 4월 |
| ○ 민간위탁 위·수탁 계약체결 | : '21. 5월 |
| ○ 기술창조발전소 준공 | : '21. 5월 |
| ○ 재산관리관 이관(도시재생과 → 섬유패션과) | : '21. 6월 |